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2057-533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01.06.)로부터 최대 1년간 적용)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1.12.17.(금)	2026.03.13.(금)	2026.03.18.(수)	2026.03.23.(월)	2026.03.30.(월) 10:00~15:00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자격확인 등 적격 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대상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세대 관람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람 예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3.(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1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87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또는 계약해제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3.18.(수)	2026.03.23.(월)	2026.03.30.(월) 10:00~15: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분양사무소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길9, 4층(CSM PLANNING))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65-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2~35층 5개동, 총 650세대 중 잔여 9세대(계약해제 세대)
- 입주시기 :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2024년 08월 준공)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2026910036	01	084.9426A	84A	2	102	1104
					104	2704
	02	084.9594B	84B	4	101	1202
					102	603
					103	1601
					104	3303
	03	084.8450C	84C	3	103	305
					105	1403
					105	1903
	합 계				9	-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동	호수	아파트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426A	102	1104	96,812,450	517,047,550	613,860,000	61,386,000	552,474,000
	104	2704	96,812,450	517,047,550	613,860,000	61,386,000	552,474,000
084.9594B	101	1202	96,831,700	540,258,300	637,090,000	63,709,000	573,381,000
	102	603	96,831,700	527,518,300	624,350,000	62,435,000	561,915,000
	103	1601	96,831,700	540,258,300	637,090,000	63,709,000	573,381,000
	104	3303	96,831,700	533,888,300	630,720,000	63,072,000	567,648,000
084.8450C	103	305	96,701,150	485,418,850	582,120,000	58,212,000	523,908,000
	105	1403	96,701,150	504,198,850	600,900,000	60,090,000	540,810,000
	105	1903	96,701,150	504,198,850	600,900,000	60,090,000	540,810,000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키볼출)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무상선택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 불가)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17.)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일정 공정 후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조건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및 잔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별매품1 금액 (발코니 확장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동	호수	별매품1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426A	102	1104	8,170,000	817,000	7,353,000
	104	2704	8,170,000	817,000	7,353,000
084.9594B	101	1202	7,935,000	793,500	7,141,500
	102	603	7,935,000	793,500	7,141,500
	103	1601	7,935,000	793,500	7,141,500
	104	3303	7,935,000	793,500	7,141,500
084.8450C	103	305	9,400,000	940,000	8,460,000
	105	1403	9,400,000	940,000	8,460,000
	105	1903	9,400,000	940,000	8,460,000

■ 별매품2 금액 (추가선택품목)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동	호수	품목	별매품2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426A	102	1104	냉장고장+키큰장+후면 냉장고장, 발코니 입식 빨래볼, 주방 아일랜드장	2,760,000	276,000	2,484,000
	104	2704	주방 아일랜드장	990,000	99,000	891,000
084.9594B	101	1202	냉장고장+키큰장, 주방 아일랜드장	2,240,000	224,000	2,016,000
	102	603	냉장고장+키큰장, 발코니 입식 빨래볼, 주방 아일랜드장	2,770,000	277,000	2,493,000
	103	1601	냉장고장+키큰장, 발코니 입식 빨래볼, 주방 아일랜드장	2,770,000	277,000	2,493,000
	104	3303	냉장고장+키큰장, 주방 아일랜드장	2,240,000	224,000	2,016,000
084.8450C	103	305	-	-	-	-
	105	1403	-	-	-	-
	105	1903	상하부장+가전소물장+냉장고장+키큰장+후면 냉장고장, 발코니 입식빨래볼	1,940,000	194,000	1,746,000

■ 별매품3 금액 (추가선택품목)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동	호수	품목	별매품3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426A	102	1104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오브제컬렉션 냉장고(빌트인타입) (BC4S1AA1(G))+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BC3K1AA1(G))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ERA-BT030) 침실1 양면 불박이장, 침실3 불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_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	19,630,000	1,963,000	17,667,000
	104	2704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스팀오븐레인지 (EON-B401SA) 엔지니어드스톤_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	8,530,000	853,000	7,677,000
084.9594B	101	1202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ERA-BT030)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골든플렉스 (거실,복도+주방,침실1,2,3)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 천장 시트패널 엔지니어드스톤_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 시트패널_거실창 주변+거실1개면	17,070,000	1,707,000	15,363,000
	102	60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 스팀오븐레인지 (EON-B401SA) 비스포크 식기세척기(DW60A8375TE)_코타화이트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ERA-BT030) 침실1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공간확보)+드레스룸, 침실3 불박이장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 천장 시트패널 시트패널_거실창 주변+거실1개면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16,150,000	1,615,000	14,535,000
	103	160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스팀오븐레인지 (EON-B401SA)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ERA-BT030)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 침실3 불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_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발코니 입실빨래볼 상판 시트패널_거실창 주변+거실1개면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17,390,000	1,739,000	15,651,000
	104	330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침실1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공간확보)+드레스룸 침실2,3 불박이장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골든플렉스 (거실,복도+주방,침실1,2,3)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 천장 시트패널 엔지니어드스톤_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장 상판 시트패널_거실창 주변+거실1개면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20,670,000	2,067,000	18,603,000
084.8450C	103	305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375,000
	105	140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375,000
	105	1903	-	-	-	-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제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유상옵션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기 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만 공급계약 체결 가능)

※ 105동 1903호 유의사항 : 해당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외에 기존 계약자가 임의로 별도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인테리어 확인은 추후 별도 안내)

※ 공급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금액)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계약금 및 잔금)	수협은행	1010-2149-4915	교보자산신탁(주)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별매품1 (발코니 확장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계약금 및 잔금)	수협은행	1010-2149-4805	교보자산신탁(주)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지정된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는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 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별매품2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매품2 납부계좌(계약금 및 잔금)	수협은행	1010-2149-4858	교보자산신탁(주)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지정된 별매품2 비용(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별매품2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별매품3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세대별 상이)

구분	동	호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매품3 납부계좌(계약금 및 잔금) *세대별 상이	102	1104	우리은행	2847-465011-8826	디엘이앤씨(주)
	104	2704		2866-716551-8774	
	101	1202		2847-464961-8775	
	102	603		2847-465011-8615	
	103	1601		2847-465281-8539	
	104	3303		2866-716631-8006	
	103	305		2847-465101-8929	
	105	1403		2866-716631-8501	
	105	1903		2866-716631-8657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지정된 별매품3 비용(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별매품3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23.(월)~2026.04.01(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3.2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03.30.(월) 10:00~15:00**
- 당첨자 제출 서류 및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수집 동의서	계약장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
	계약금 입금 영수증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출입국사실증명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계약장소 비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인지세)	해당구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 수입인지 사본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기타 요청 서류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body>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참고사항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 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발곡(주),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발곡(주)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발곡(주)임을 계약자는 인지한다.
- ②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③ 발곡(주)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발곡(주)(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⑤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공급금액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⑥ 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발곡(주) 및 시공자인 디엘이앤씨(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⑦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발곡(주)가 부담한다.
- ⑧ 계약자가 납부한 공급금액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㉑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발곡(주) 또는 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명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발곡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타워2 동 38층(여의도동, 파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 (마곡동, 원그로브)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7466166	110111-773680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12.17.)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길9, 4층(CSM PLANNING)

■ 분양 문의 : 02-2057-5333